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97
2024.9.2.

■ 판례 동향

보세판매장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참깨스낵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 개정법령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해외 직구 10년간 4.1배 증가 … 역직구는 2019년 이후 침체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찬기
편 집 인 김재현

총 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 자 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4년 9월 2일(통권 제2097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 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해외 직구 10년간 4.1배 증가 ··· 역직구는 2019년 이후 침체

06 Weekly News

16 전문가 칼럼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실장

관세행정실무해설

22 **관세행정안내**

비당사국 수출자가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28 **질의응답사례**

야돔의 HS Code

판례동향

30 **관세판례해설**

보세판매장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39 **품목분류해설**

참깨스낵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45 **품목분류 M.A.P**

즉석밥 분류 사례

50 **세번 바로잡기**

찹쌀가루 조제품

51 **상식 밖의 상품학**

헤어드라이어 유해 전자파 논란

최신개정법령

54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57 **훈령**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61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 직구 10년간 4.1배 증가 ··· 역직구는 2019년 이후 침체

직접구매 품목 순위 1위 의류·패션, 2위 음·식료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등장으로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역직구는 2019년 정점을 찍었다가 작년 기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직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로 직접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26일 발간한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규모는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작년 6조 7,000억원으로 4.1배 늘었다. 반면 해외 역직구 규모는 2014년 7,000억원에서 2019년 6조원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3년 1조 7,000억원까지 축소됐다. 작년 기준 해외 직구와 역직구 간 거래액 격차는 5조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해외 직구·역직구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구는 2021년까지 미국이 1위였으나 2022년부터 중국이 1위로 올라섰다.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대상이 미국 쇼핑몰이 주류였지만, 저가를 앞세운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 'C-커머스'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C-커머스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고 2023년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직구 또한 크게 늘었난 것이다. 역직구의 경우 중국이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해외 직접구매와 직접판매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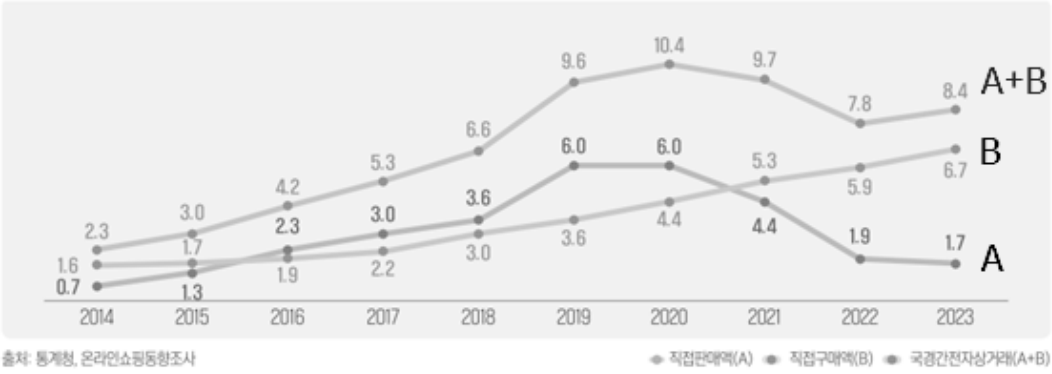

자료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과 2023년의 해외 직구 품목 순위 1위는 의류·패션이며 2위는 음·식료품이었다. 2013년에는 3위 생활·자동차, 4위 화장품, 5위 가전·전자 통신기기였으나 2023년 3위 가전·전자 통신기기, 4위 생활·자동차, 5위 화장품으로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

역직구의 경우 2014년과 2023년 모두 1위는 화장품, 2위는 의류·패션이었으나 2014년과 달리 2023년에는 순위에 없던 음반·비디오·악기가 3위에 올랐다.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역직구가 급감한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꼽았다. 전체 역직구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4년 46.9%에서 2019년 86.3%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62.2%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 역직구에서 화장품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달한다. 화장품 품목의 역직구는 2020년 4조 9,000억원이었지만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중국 전체 역직구 상황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유통연수원 마종수 교수는 "전체 역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한한령으로 중국정부가 화장품, 식품, 콘텐츠 구입을 제한하며 화장품 역직구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직구 산업은 지금의 저점을 지나 향후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미국이나 유럽 등 非중국 국가 대상 역직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정부 또한 역직구 산업 증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관세청은 8월 22일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해외 주문자가 동일할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 물품을 하나로 묶어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판매자 'K 셀러'를 모집하는 등 국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령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eBay)는 9월 4일 K 셀러 모집을 위한 신규 셀러 대상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국 알리바바닷컴은 8월 8일부터 K 셀러 전용 플랫폼 '한국 파빌리온'을 운영 중이다. 반면 역직구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는 오히려 규모가 줄고 있다. 큐텐은 올해 6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론칭했으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운영을 중단했으며 11번가도 역직구 사업을 종료했다.

상공회의소는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는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K 콘텐츠, K 뷰티, K 푸드 등이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정연승 교수는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정부가 한국으로 빨리 물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세관이나 통관 쪽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명확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소매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유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역직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전국세관장회의서 스마트혁신 성과·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 발표

총 15조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관세청은 8월 28일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고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했으며,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성과로 총 15조 4,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올해 2월 수립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로 첫 번째 목표 국가 번영에는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한 것을 들 수 있다.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해 871개(전체의 56.3%)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석유 블랜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 개혁해 연간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Open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000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는 등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또한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해 대상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돼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EU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1,162개 기업이 연 50억 달러의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두 번째 목표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마약밀수 단속 체계를 강화했다.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밀수(2024년 1~7월)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다.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원을 절감하고, 국제우편 세관신고 서식 개정을 이끌어 신고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김성은 기자 |

내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올해보다 4.3%↑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해외 직구 식품 구매 검사 확대 예정

2025년 식의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안이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8월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특히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7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그중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원(2024년 78억원)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원(2024년 56억원)이 편성됐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 직구 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에는 1,216억원을 편성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1억원(2024년 21억원), '식품관리운영' 23억원(2024년 14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억원(2024년 14억원) 등이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규격 설정을 주도해 식품안전관리 규제 공신력을 확보한다. 또 국내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 범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1,832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가 신설됐으며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밖에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791억원을 편성해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 3억원(신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83억원(2024년 17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100억원(2024년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 김성은 기자 |

중소기업 대상 동남아 노선 해상운송 지원

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8개 노선에 매주 300TEU 규모 전용선복 투입

홍해 사태 장기화와 중국發 밀어내기 물량 증가로 미주, 유럽 노선의 해상운임이 급등한 가운데 동남아 노선의 해상운임도 동반상승하며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렇게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 노선에 대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월 28일 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 40ft 컨테이너, 8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동남아 노선의 운임은 올해 1월 318달러에서 8월 1,482달러로 4.7배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각각 2.6배, 2.1배 상승한 북미서안과 북유럽 노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해상운임 상승뿐만 아니라 선복 확보난도 가중되며 중소 수출업계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이 마진이 높은 미주와 유럽 노선에 신조(新造) 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으며, 기존 동남아 노선에 투입된 선박마저 미주·유럽 항로로 이전시키면서 동남아向 선박 공급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미주와 유럽 운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 운임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LX판토스 및 고려해운·남성해운 등 7개 국적선사와 함께 동남아 노선 대상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5개국 8개 노선에 매주 약 300TEU의 전용선복을 시장가 대비 저렴한 운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워더 중개운임 및 서비스 수수료 등 기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노선별 지원 선복 및 담당선사 ●

출발지	도착지 국가	도착지 항만	전용 선복 (TEU/주)	담당 선사
부산	인도	첸나이	30	고려해운
		나바쉐바	70	
	싱가포르	싱가포르	20	장금상선/ 흥아해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20	
	태국	방콕	20	
		람차방	20	
	베트남	호치민	60	남성해운, 천경해운, 팬오션, 범주해운, 동진상선
		하이퐁	60	

* 사업기간 중 담당선사 및 전용선복 변동 가능

한·태 마약 합동단속, 올해 123kg 적발 ··· 태국發 밀수 차단

관세청, "출발국·소비국 간 긴밀한 협력, 밀반입 차단 효과적"

관세청은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 Ⅲ)]'을 실시해 태국發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發 마약류 전체(184.6kg,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제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하면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 → 61kg)한 수치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와 비교하면, 합동단속의 월평균 단속 건수 11.5건, 적발 중량 261kg(단독단속 시 월평균 단속 건수 8.4건, 적발 중량 15kg)으로 성과가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 2022~2024년 단독단속 및 합동단속 실적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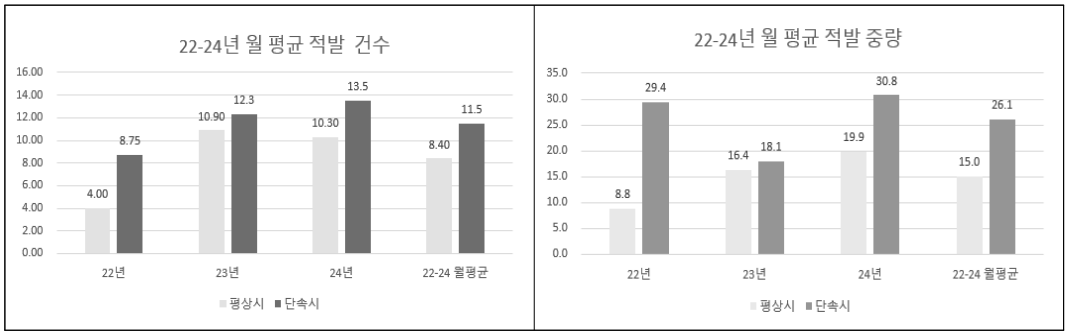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發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發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외 대마초(0.8kg), 케타민(0.4kg) 기타(1.05kg)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이다.

관세청은 이번 3차 합동단속의 작전기간이 짧았지만,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토대로 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두를 기증하는 등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로 효율적인 마약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韓, 올해 글로벌 10 수출국 중 최고 수출 증가율 기록

중동 리스크에도 8월 수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5개월 연속 흑자 확실시

우리 수출이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누적 수출액이 작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7월 누계로는 268억 달러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올해 1~7월 769억 달러,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작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뒤를 이어 자동차품목(424억 달러, +2%)과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 달러, +0.2%)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선박(129억 달러, +19%), 석유제품(310억 달러, +9%)·석유화학(286억 달러,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8월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도 가졌다.

박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히고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차관은 "對중동 수출 비중(2024년 상반기 2.8%)이 크지 않지만,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KOTRA·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 하구현 기자 |

해외 직구 젤리·사탕서 마약류 성분 확인

식약처 "통관보류 등 국내 반입, 판매 금지 조치"

해외 직접구매 식품 중 젤리, 사탕, 초콜릿, 음료 등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을 비롯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을 살펴보면, 젤리류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사탕 5개, 음료 4개, 초콜릿·과자·차 3개 등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크라톰, 미트라지닌은 국소마취, 중추신경계 억제, 입마름, 소변증가, 식욕상실, 변비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식욕부진, 체중감소,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독 시 금단증상으로 적개심, 공격성, 근육통, 작업능력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각각 요청해 적발된 34개 제품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명 및 검출 성분, 제품 사진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대마 등 마약성분 확인 제품 ●

제품명	제조국	제품 사진	제품명	제조국	제품 사진
HHC Gummies watermelon splash	미국		HHC Candy raspberry	네덜란드	
HHC Lolly Pop 50mg	네덜란드		Smoking Dog THC Infused Dark Chocolate Bar	미국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어린이용품 포함 4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21.1%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결과의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한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8개, LED 등기구 3개, 플러그 및 콘센트 2개, 와플기기 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조사한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 승차용 안전모 2개 등 11개 제품이 해당됐고, 특히 94개 어린이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7개, 완구 4개, 유아용 캐리어 1개 등 15개 제품도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 포털(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 하구현 기자 |

중국産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産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됐고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수입·판매업소(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원산지)	수입량(kg)	제품 사진
온연푸드 (경기도 화성시)	목이버섯	DONGNING ZHONGYUAN BLACK FUNGUS CO.,LTD (중국)	3,960	

포장단위(kg)	소비기한 (포장일자)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mg/kg)	검출치(mg/kg)
1	포장일로부터 2년 (2024. 3. 13.)	카벤다짐	0.01 이하	0.03

산업부·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 공동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란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전 세계 19개국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 글로벌 SAF 수요 확대가 2022년 24만톤에서 2030년 1,835만톤으로 증가할 것(국제항공운송협회)에 대응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에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등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아·태지역 식물검역 전문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 등을 초청해 식물검역 국제기준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매년 제·개정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PPC는 UN 산하 식량 관련 국제기구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산물 교역 관련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한다.

검역본부는 국제농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식물검역 전문가 30명이 참가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과실파리를 기주로 하는 식물의 국제적 시장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 논의와 더불어 망고 생과실의 국제적 이동, 목재류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재배지검사, 종자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등을 포함한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자금조달 방안, 식물검역 지역기준 채택 등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의 최근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베트남 첫 파견된 K-혁신사절단, 中企·벤처 혁신성 알려

중기부, 스마트제조 등 혁신 기업 25개社 파견

한국 기업의 혁신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K-혁신사절단'이 베트남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혁신사절단은 올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을 통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파견됐다. 인공지능(AI), 스마트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등 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현지 언론과 바이어 등을 직접 만나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며, 5% 이상의 GDP 성장과 1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진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책 등에 따라 우리의 혁신 중소·벤처기업 진출이 유망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중기부는 첫 번째 K-혁신사절단 파견국가를 베트남으로 정하고, 베트남에서 유망한 스마트제조·AI 등 분야의 25개 중소·벤처기업으로 K-혁신사절단을 구성했다.

중기부는 "단발적 바이어 미팅으로만 끝나던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바이어 미팅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을 알리고 현지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혁신사절단은 먼저 테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기업들의 혁신성을 홍보하고 기업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K-INNO Pre-showcase'를 개최했다. 개막행사에서는 K-혁신사절단 참여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현지 언론과 내빈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무대 PR'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누빅스, 에스엔이컴퍼니 등 기업 발표 전에 미리 무대에 올라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직접 소개했다.

또한, 중기부는 유관기관 방문 프로그램 'K-INNO Delivery Bus(현지기관 방문 비즈니스)'도 지원했다. 사업 분야에 맞춰 기업들이 직접 관련 현지기관을 찾아가 홍보할 수 있도록 현지기관을 섭외해 연결한 것이다.

사전 매칭을 통한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도 진행했다. 베트남에서는 국영통신사 Viettel 그룹과 CMC Global, 방산 국영기업인 HITACO 등이 바이어로 참여해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K-혁신사절단은 앞으로 열릴 '한·베 제1차 중소벤처 장관급 위원회', '베트남 외교부 차관 주최 베트남 업계 CEO 만찬' 등에도 자리해 베트남 주요 정부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높은 교육열 등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해 스마트 제조기업, 에듀테크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K-혁신사절단을 구성했다"며, "이번 파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서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 확대 논의

기획재정부는 8월 28일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가졌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이번 정책협의는 올해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캄보디아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만큼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EDCF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8월 29~30일 EDCF 현지 구매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해 EDCF 정책 방향 및 절차 등을 소개했다.

서울세관·한국수입협회, 수입업체 CEO 위한 관세행정 리스크 안내

서울세관이 한국수입협회와 수입업체 최고경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관세행정 CEO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수입업체 CEO가 효과적으로 관세행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관세청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에서는 수출입 업무 수행체계, 실수로 인한 경영 위기사례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등을 직접 안내하고, 관세행정에 관한 이해가 기업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스스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CEO 체크리스트'를 현장 배포하고, 품목분류·원산지·외국환 등 주요 점검항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CEO들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세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CEO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방침이다.

추석 맞이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 시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 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 수입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한국경제[1]

정 영 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실장

최근 미국경제 침체 우려 고조

그동안 미국경제가 선진국에서 나홀로 고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던 상황에서 최근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노동시장 지표들이 발표됐다. 특히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2024년 3월 3.8%던 실업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해 7월에는 4.3%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와 지난 6월 기록한 4.1%를 상회했다. 올해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1만 4,000명 증가에 그쳤다. 6월 17만 9,000명, 시장 예상치 17만 5,000명을 크게 하회하고 지난 12개월 평균 21만 5,000명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미국 노동시장이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느는데, 고용은 줄고 해고는 늘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그동안의 노동시장이 급랭으로 반전될 것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기업 심리 지표도 악화됐다. 올해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6.4로 8개월 새 최저치로 하락했고, 올해 7월 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46.8(기준치 50.0)로 크게 하락해 동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4개월 연속 확장기준(50)보다 낮았다.

●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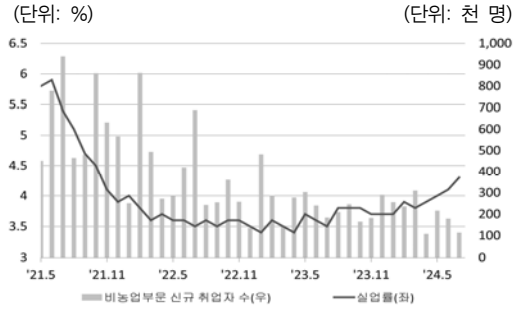

자료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기준 : 2024. 8. 12)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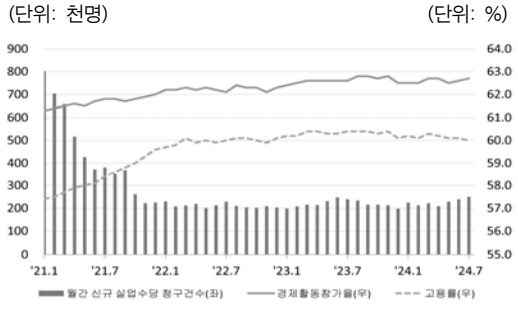

주 :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월 마지막 주 기준
자료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기준 : 2024. 8. 12)

1) 정영식(2024. 8. 16.) 'R의 공포'에 떠는 한국 경제 … 대미 수출 영향 받나 [스페셜리스트 뷰]. 이코노미스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음.

특히 미국 실업률의 상승은 단순히 노동시장 급랭 우려에 그치지 않고 경기침체 리스크로도 확산됐다. 실업률 지표를 이용해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이 미국경제의 침체를 알리는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샴의 법칙은 2019년 클라우디아 샴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이코노미스트가 고안한 것으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과 직전 12개월 중 최저 실업률 간의 차이가 0.5%p 이상이면 경기침체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8월 2일 발표된 7월 미국 실업률이 4.3%로 높아지자 샴의 법칙 수치가 6월 0.43%p에서 7월 0.53%p로 기준치 0.50%p를 넘었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기 이후인 2021년 4월 이후 처음이다.

● 샴의 법칙(Sahm Rule) 침체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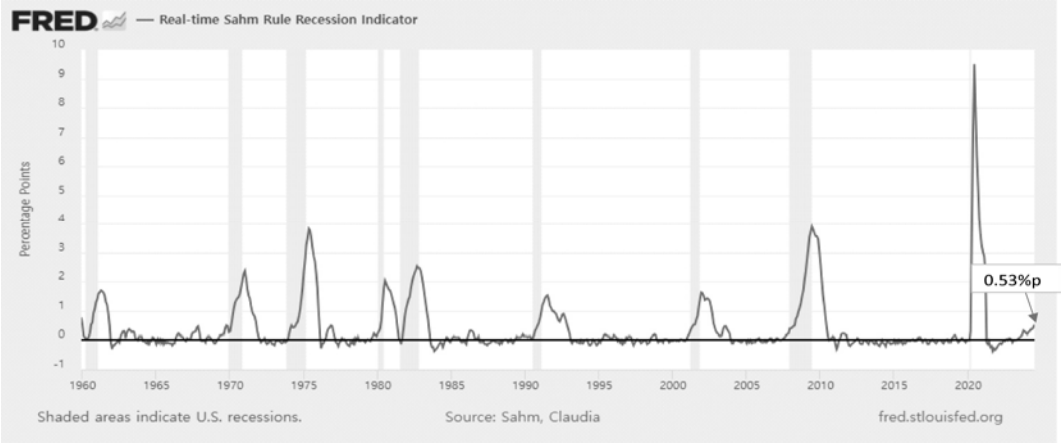

자료 : fred.stlouisfed.org(기준 : 2024. 8. 12)

이러한 지표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됨으로써 그동안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미국경제가 이제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침체 또는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본다. 크게 네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최근 미국 노동시장 냉각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7월 4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한 데에는 악천후 등 일시적 요인이 가세했다. 미국 고용보고서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나쁜 날씨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응답자 수가 43만 6,000명으로 6월 5만 9,000명의 약 7배, 과거 역사적 평균치(7월)인 3만 3,000명의 약 13배에 달했다. 즉 허리케인(Beryl)의 영향으로 텍사스주의 실업수당 청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시간주의 자동차 공장들이 여름 정비에 들어가며 해고가 늘어났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교사 등)가 여름 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등 일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즉 노동시장

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노동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기침체를 알리는 샴의 법칙이 이번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표를 개발한 클라우디아 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샴의 법칙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노동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최근 실업률 상승은 해고가 아니라 이민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구직자가 더 많이 증가해 생긴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올해 6월 해고율은 0.9%로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보였다. 최근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늘어나고 기업의 구인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노동 공급(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노동 수요(기업의 구인자수)는 높은 수준에 있어 노동시장이 급랭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 급랭을 막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삶의 질 중시), 근무형태 변화(재택근무 선호)가 발생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채용난을 겪으면서 잉여고용 유지 등 기업 고용 행태가 바뀌는 현상(Labor Hoarding)이 나타났다.

●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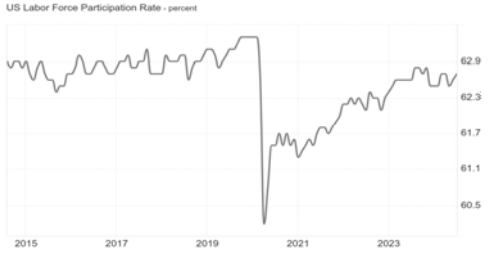

● 미국 구인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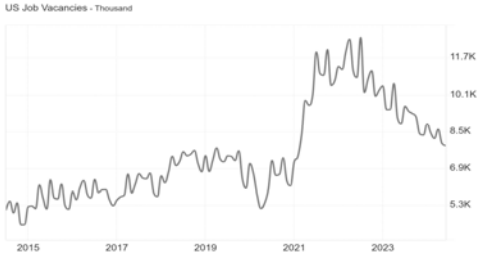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기준 : 2024. 8. 12)

셋째, 최근에 개선된 경제지표도 발표되고 있고 향후 경제전망이 양호하다. 올해 7월 미국의 ISM 서비스 PMI는 6월 48.8보다 높고 확장기준인 50을 상회하는 51.4를 기록했고,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7.8로 예상치 66.9를 상회했다. 7월 25일에 발표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2.8%(전기비 연율 기준)를 기록해 예상치 2.0%과 1분기 성장률 1.4%를 크게 상회했다. 개인소비, 정부지출, 재고투자가 1분기에 비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잠재성장률[2](1.8~1.9%)보다도 높은 수치다.

2)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 또는 완전고용 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또한 8월 2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 7,000건으로 전주 대비 7,000건 감소했고, 지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0%로 예상치 0.3%, 6월 -0.2%를 크게 상회했고,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경제지표와 정보를 반영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전망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 모델은 최근 금융시장 공포 상황을 거친 8월 16일 기준으로도 올해 3분기 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의 전망을 수집한 '블루칩 컨센서스'보다도 다소 높은 수치다.

넷째,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악화 시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美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보여주는 자산 잔액은 2022년 5월 약 9조 달러에서 최근 7조 2,000억 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약 4조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1.8배 많은 수준이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은 민간의 지속적인 자금경색, 유동성 부족 사태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기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美 연준의 금리인하, 양적축소 중단 등 통화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美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다.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연준이 이제는 물가와 함께 노동시장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언급했다.

● 美 연준의 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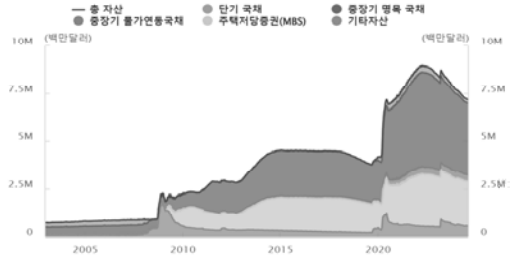

● 미국 물가상승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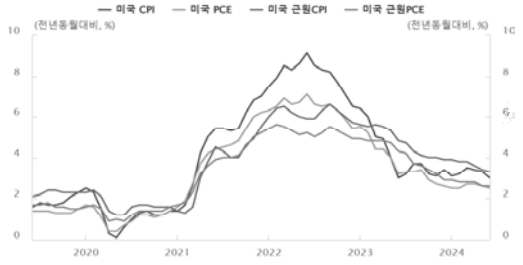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기준 : 2024. 8. 12)

향후 미국경제는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큰 폭의 실질금리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가 중요하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소비와 투자의 기회비용이 상승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현재 소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축해 벌 수 있는 이자소득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미국의 실질금리(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가 2022년 8월 이후 플러스로 반전됐고 그 이후 가파른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

● 미국의 실질금리(TIPS)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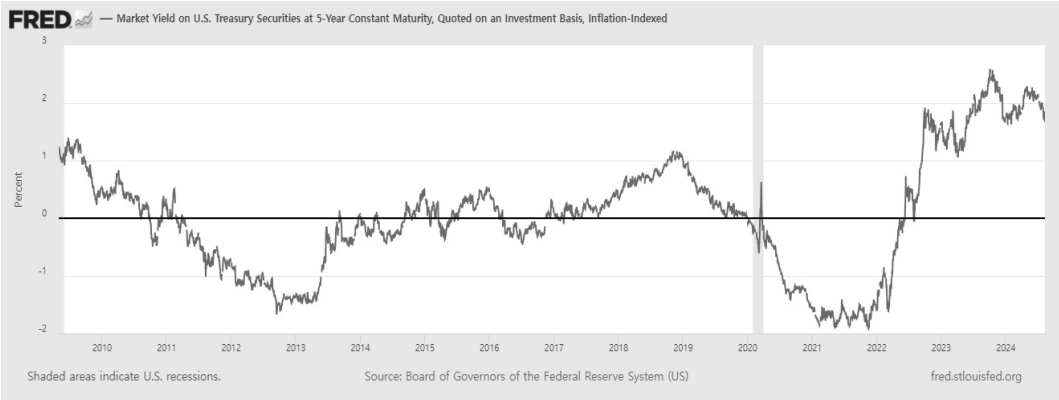

자료 : fred.stlouisfed.org(기준 : 2024. 8. 12)

다음으로 미국의 견조한 소비를 가능케 한 미국 노동시장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랭은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4%를 크게 상회하던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3.6%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3.3%, 역사적 평균인 3%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끝으로 그간 소비 모멘텀을 지지해왔던 가계 전체의 초과저축이 소진된 점도 경기둔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 기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된 초과저축이 2024년 3월경 소진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

향후 미국경제는 침체나 경착륙보다는 둔화나 연착륙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금융경로와 무역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우선 미국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미국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거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경기 둔화로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경기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전개될 수 있고 美·日 금리 격차 축소로 최근과 같은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될 리스크가 있다. 엔캐리트레이드란 초저금리인 엔화를 차입해 고금리 또는 고수익 통화 자산에 투자·대출하는 거래로 2022년 이후 초엔저 진행 과정에서 급증했다. 엔캐리트레이드의 대용지표로 알려진 일본 내 외국은행 지점의 주요자산이 2021년 월평균 7조 4,000억엔에서 올해 1~5월 평균 11조 4,000억엔으로 55% 증가했다.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캐리트레이드 규모가 작년 말 137조엔(약 1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과정에서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크게 축적된 엔캐리트레이드의 일부에 불과해 향후 엔캐리트레이드 청산發 금융불안이 재발될 수 있다. 주요 글로

벌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하고 위험자산 가격 상승에 일조한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금융시장 및 주요국 간 촘촘히 연결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국의 고성장, 고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위험자산에 대거 유입됐는데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 과정에서 단행될 미국의 금리인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가 급락,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의 제1 수출 시장인 對美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1~7월 對美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0%로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對美 주요 수출업종은 자동차 비중이 가장 높고, 전기전자 및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공 단계별로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등 주로 중간재로 활용되는 제품의 교역이 對美 수출의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한국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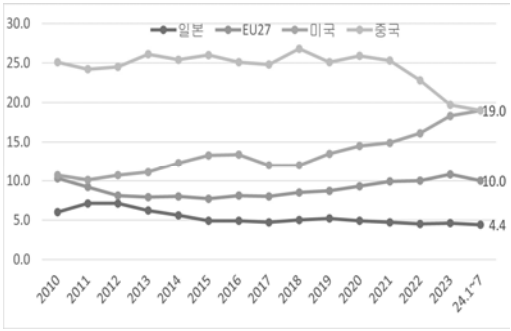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기준 : 2024. 8. 12)

● 對美 산업별 수출입 현황 ●

(단위: 억 달러, %)

	순위	산업	코로나19 이전 (2012~2018) 규모 (연평균)	비중 (연평균)	코로나19 및 그 이후 (2019~2023) 규모 (연평균)	비중 (연평균)
수출	1	자동차	598.4	31.4	780.3	28.2
	2	전기전자	354.7	18.6	497.0	18.0
	3	일반기계	178.6	9.4	264.0	9.9
	4	반도체	128.1	6.7	241.1	9.0
	5	철강	127.6	6.7	126.9	4.7
	6	기타	518.0	27.2	765.2	28.6
수입	1	전기전자	190.4	13.9	195.0	9.7
	2	농산물	150.2	11.0	177.3	8.8
	3	반도체	149.5	10.9	176.7	8.8
	4	원유	24.2	1.8	294.6	14.6
	5	천연가스	44.4	3.2	243.2	12.1
	6	기타	807.5	59.1	926.6	46.0

자료: 산업연구원(2024. 3. 22).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p. 4.

미국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 이들 업종의 對美 직접수출과 제3국을 통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첨단산업 유치 강화로 인해 한국기업의 對美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공급망을 통한 對美 수출이 수출 급랭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높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자금관리, 환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對美 수출 시장 부진에 대비해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수출자가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캐나다 FTA
질문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제3국 송장 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 사항에 근거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따라서 자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입 당사자는 FTA 원산지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게 된다. 대부분 협정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으며, 작성 방법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인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캐나다 FTA 상 비당사자인 미국의 수출자를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수출자가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 방식을 활용하며,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작성이나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협정 중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협정상 규정돼 해당 통일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FTA이기도 하다. 만약 한·캐나다 FTA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인정될 수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캐나다 소재 A社가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파일로 변환한 수정서식(서식 상이)으로 작성·송부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의거해 통일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통일규칙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 한·캐나다 FTA를 활용해야 한다.

자율발급은 한·캐나다 FTA와 같이 통일서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미 FTA와 같이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협정에서 정한 요소(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어떠한 서식을 사용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협정도 존재한다. 또한 한·호주 FTA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제시(표준서식)됐고, 작성 방법도 제시됐으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변형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는 협정도 존재한다.

결국 같은 자율발급에 관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라고 하더라도 각 협정문의 규정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은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제3국 송장 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일단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1란에 미국(제3국)의 수출자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데, 한·캐나다 FTA상 수출자, 생산자 등의 정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사안에 따라 제3국 송장에 관한 사항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과 거래당사자 요건, 제3국 송장에 따른 FTA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제3국 송장 발행 시 FTA 특혜관세 적용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5가지는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④ 절차적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을 말한다.

FTA는 협정 체결국 간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제도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협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체약 당사자 간 거래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소유권의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2건 이상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 발행될 수 있는데, 이를 제3국 송장이라고 부른다. 중계무역은 수출입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방식으로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해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FTA 적용은 가능하다. 즉, 중간에 제3국의 당사자가 개입한다고 해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캐나다 FTA 또한 제3국 송장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상 해당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FTA(예 : 한·아세안 FTA)에서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의 경우 관련 사항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에 대한 정보(회사명 등)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체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측에서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봐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1)]

대부분 FTA에서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됐다고 해도 FTA 원산지증명서 자체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 조심 2017관0057(2017. 7. 3.)

다만 한·미 FTA의 경우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양측 통상장관이 원산지검증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이 발효됐고, 이를 반영한 업무지침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는다.

(3)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에서는 통일서식으로서 제1란에 Exporter's Name and Address (수출자의 성명, 주소)를 작성하고, 제3란에 Producers's Name and Address(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작성한다.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__ YYYY MM DD To: _____/___/___ YYYY MM DD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를 적는다.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를 적는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고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한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어야 한다.

또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작성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나오는데 제11란의 Authorized signature(서명권자의 서명) 또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_____/____/___ YYYY MM DD	Telephone: Fax: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한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상 한·캐나다 FTA에서 규정한 수출자, 생산자 등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캐나다 FTA에서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해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를 말하고, 생산자란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人)을 말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생산자' 등의 해석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캐나다 FTA 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협정 및 국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따르면 제1란, 제3란, 제11란 등에는 '당사국 영역 내(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등의 용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캐나다 FTA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서 당사국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생산자도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질문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제1란, 제11란 등)에 미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였지만, 관세청은 자국 영역에 속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함을 안내하며 질문 내용과 약간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결국 제1란·제11란의 수출자에 대한 정보는 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한 수출자 정보가 기재돼야 함을 간접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1란·제11란 등에 제3국 수출자의 정보가 기재돼서는 안 된다. 원산지증명서 또한 한·캐나다 FTA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한국 또는 캐나다)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돼야 한다.

업무적 편의 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위해 제3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실무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 FTA에서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에 대해 제3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당사자 및 관세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야돔의 HS Code

야돔(Thai inhalers)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관세율표에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됩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참고로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서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은 코막힘, 현기증, 두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소매 포장된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제3004.90-9900호에 분류가 검토됩니다.

보세 화물 /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수용능력 증감 신청 절차와 승인 소요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 서식을 봤을 때 처리기간은 2일로 확인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

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③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5호 서식)
2. 영 제190조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 서식)
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신고
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7호 서식)

수입 / 드라이버의 수입요건

나사 체결 드라이버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8467.2호에는 '전동기를 갖춘 것', 제8467.29-0000호에는 기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8467.29-0000호에 분류되는 전동기를 갖춘 나사 체결 드라이버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ㅇ 전기드라이버 ㅇ 전기잔디깍기 ㅇ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됨)
ㅇ 전기드라이버 ㅇ 전기잔디깍기 ㅇ 라우터 ㅇ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ㅇ 전기드라이버 ㅇ 전기잔디깍기 ㅇ 라우터 ㅇ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보세판매장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판례 해설

권 종 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사건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관한 신규 특허를 받아 'D 면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다. 소외 F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F의 이 사건 각 수입행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모회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에서 원고의 직원인 G, H 등에게 지시해 외국인 명의를 빌려 총 4점의 고가시계를 구입해 해외에 반출한 다음, 다시 직원들을 통해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해 이 시계들을 밀수입했다(이하 순번별로 '제1 수입행위', '제2 수입행위'와 같이 특정하고, 모두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수입행위'라 하며, 이 사건 각 수입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F 등'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이 사건 각 수입행위는 인천세관장에게 적발됐고, 인천세관장은 F 등을 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각 수입행위에 대해 F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했고,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수입행위 중 제2, 3, 4 수입행위는 원고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로 원고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제1 수입행위에 대해서만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계속 중이다.

2)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위 공소제기 결과와 원고의 과징금 부과·경감 요청 등을 반영해 원고에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불복,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57343 판결),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30637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4. 4. 12.자 2024두30632 판결).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수입행위는 원고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F 등의 개인적 일탈행위이고, 특히 제2, 3, 4 수입행위는 B가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발생한 일로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무와는 무관한 사용인들의 사적 일탈행위를 이유로 삼아 그 소속 법인을 제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관세법」 제178조 제1항[1]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사용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업무 관련성 요건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F 등의 행위는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제1 수입행위와 관련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입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극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

1)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 판결의 요지

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임원의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가 「관세법」을 위반해 밀수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세관장은 그 밀수입범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조항은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해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업무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나 해석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거나, 위 각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자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인 경우 이러한 보세판매장 및 보세물품과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이와 관련된 감독·감시의무 등의 최종 책임자도 법인의 대표이사다.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적용·집행과 관련된 피고 내부의 행정규칙인 舊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7호, 2016. 8. 12. 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7조 제4항[2] 제2호가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곧바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물품반입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보세구역과 보세물품의 특성 및 법인의 업무가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자연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③ 「관세법」 제175조 제4, 5, 7, 8호 및 「관세법」 제17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관세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으로 하여금 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감독하도록 한 법인에 대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원의 「관세법」 위반 행위에 업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조항은 위 규정들의 요건을 다소 완화해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전 본인이나 사용인이

---

2) 舊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행정제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후략>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균형상 그 수위를 특허의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물품반입 등의 금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으로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의 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고의로 보세판매장에 보관 중이던 보세물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세관장은 형사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그 어떠한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없고, 심지어 해당 대표이사가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을 여전히 운영하면서 보세판매장과 보세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하면서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부여된 보세판매장 및 보세물품과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책임의 중대성, 그에 따라 사용인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감시·감독 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고시 제37조 제4항 제2호와 결합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한 관세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업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특허의 부여권자인 행정청은 그와 관련된 각종 제재규정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범위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이를 반영해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재규정을 둔 것을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위반행위자의 신분 및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역과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내용 등을 고려해 물품 반입 등의 정지처분 기간을 2개월로 정한 후 위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15%를 감액해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했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총 4차례에 걸쳐 고가시계들을 불법으로 구입한 다음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격히 통제돼야 할 보세물품의 관리·유통체계가 내부자에 의해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국가가 상당한 액수의 과세권한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등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해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지만,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다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한 해설

가. 보세판매장 개요

보세구역이란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에서 장치·검사·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3] 특허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판매하거나 보세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이용한 제조·가공·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4]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용 물품 등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

3) 「관세법」 제154조

4) 「관세법」 제154조, 제174조 ~ 제196조

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5] 일반적으로나 관세행정 실무상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다. 보세판매장의 종류에는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등이 있다.[6] 출국장 면세점은 1962년, 시내면세점은 1979년, 입국장면세점은 2019년에 최초 개점했으며[7], 최근 연도별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수는 다음 표와 같다.[8]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체 수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업체 수	57	60	52	48	53

나.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징금에는 경제적 이익환수 과징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재 목적의 과징금이 있고 경제적 이익환수 과징금을 '본래의 과징금'이라 하고, 그 이외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 한다.[9] 「행정기본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과징금의 기준, 과징금 납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4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

근거 법률	과징금 종류	근거 조문
「관세법」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법 제178조 시행령 제193조의3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법 제224조 시행령 제231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법 제327조의3 시행령 제285조의6 시행령 제285조의7
「대외무역법」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60조

5) 「관세법」 제196조 제1항 및 제2항
6)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등
7) 관세청, <2023 관세연감>, p30
8) 관세청, 전게서, p26
9)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4년, p677

근거 법률	과징금 종류	근거 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입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혼동, 손상·변경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외국환거래법」	환전영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23조

다. 보세판매장 물품반입 등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 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2호, 이 사건 조항),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 제3항에서는 이에 따른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인 舊「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를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및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앞서 살펴본 과징금의 종류 중 변형된 과징금으로 분류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그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그 위반자인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로 인해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0]

10) 박균성, 전게서, p678~679

라.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인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임원의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조항에서는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는 업무 관련성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문대로 해석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 '업무에 관하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조항과는 다르다. 더욱이 해당 조항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때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내용은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항은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보세구역 운영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라는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세관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관장이 이 사건 조항을 실제 적용·집행할 때는 이 사건 고시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고시 제37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고시에서는 '사용인'을 해당 법인의 임원과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인으로 구별하고, 후자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인이 소속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관세법」상 밀수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달리 소속 법인이 곧바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그 범위를 축소한 반면,

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세관장이 이 사건 조항을 실제 적용·집행할 때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관세법」상 밀수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 정지 등의 제재를 하지 않는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밀수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라도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모든 사용인에 대해 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당 보세판매장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여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판결 등),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모든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보세판매장의 운영자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인 경우 이러한 보세판매장 및 보세물품과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이와 관련된 감독·감시의무 등의 최종적인 책임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가 보세판매장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가 「관세법」을 위반해 밀수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세관장은 그 밀수입범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참깨스낵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HS 품목분류표 및 부속간행물

HS 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되는 상품의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품목분류를 도모하기 위한 HS 협약의 부속서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류·소호의 주(Note)와 HS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된 분류체계다.

'통칙'과 '부·류·소호의 주', '호 및 소호의 용어'를 'HS의 3대 구성요소'라 하며, 법적 목적을 위한 품목분류는 이 3대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분류원칙을 정한 「관세율표의 HS 해석에 관한 통칙(GRI)」을 포함해 모든 무역상품이 분류될 수 있도록 제21부·제97류(제77류 유보)·제1,228호(4단위 호)·제5,612소호(6단위 소호)의 4차원으로 된 분류체계와 각각의 부·류·소호에 부가된 주(Note)에 의해 품목분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한된 분량의 품목분류표만으로는 신상품 등 무역패턴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상품의 품목분류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부속간행물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공식적인 분류지침으로 HS 각 호의 공식적인 설명서를 제공하는 'HS 해설서(HS Explanatory Notes)'가 있으며,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류를 위해 HS 위원회에서 분류결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WCO 총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되는 유권해석인 'HS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S 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청장 고시로서 수용하고 있으며, HS 품목분류를 위한 매우 유용한 실무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HS 품목분류표와 부속간행물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정의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이나 무역 동향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기존 물품이라 해도 그 기능과 용도, 원리 등이 변형되거나 확대되는 물품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HS 협약은 협약부속서를 변경, 삭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체약국이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통계 등을 목적으로 소호를 세분해 사용하거나 품목분류표에 추가주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품목분류표의 해석을 위한 보조적인 국내 규정을 추가하기도 한다.

「관세법」 제8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9조는 HS 품목분류표나 해설서 규정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따르는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1)]

2024년 현재 43개 품목에 대한 적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세율 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식품류 품목이 이중 39개를 차지하고 있다.

3. 참깨스낵의 품목분류(WCO HS 위원회)

유럽연합(EU)은 제70차 WCO HS 위원회(2022. 9.)에 다음 물품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했다.

● 참깨스낵의 물품 설명 ●

■ 성분 및 성상
- 품명 : AMKI SESAME SNAPS
- 성분 : 참깨 49%, 포도당 시럽 32.3%, 설탕 18.7%
- 성상 : 얇고 단단한 직사각형(약 35㎜ × 70㎜)
- 30g 단위로 개별 밀봉 포장됨

1)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세청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었으나 2015년 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품목분류상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참깨스낵(Sesame Snap)의 쟁점세번 ●

쟁점세번	호의 용어
제1704.90호	그 밖의 설탕과자(Sugar confectionery)
제2008.1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과실, 견과류 등의 조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잔여 호의 성격을 가진 호이므로 제1704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가 분류되며, 제1704호 해설서는 설탕과자에 대해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조제품(sugar preparation)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고 해설하고 있다. 10가지 그룹의 상품을 예시하고 있으나 설탕과자의 원료, 설탕의 함량, 구체적인 가공단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견과류, 참깨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기재부령)」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번호	품명	적용기준
18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가. 포장상태, 중량, 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1704호에 분류한다. 1) 견과류 등(부수었거나 잘게 부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2)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成形體)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 중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것 나. 페이스트상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물품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1704호에 분류한다. 비고 '**견과류 등**'이란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뿐만 아니라, 제12류의 **대두·땅콩·참깨 등과 같은 씨나 종자를 포함**하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자당이나 제1701호의 자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을 말한다.

쟁점물품은 포장상태나 중량, 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임은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가목 1)항이나 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1704호에 분류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 도포하지 않아 외관상 깨 모양이 드러나 보이므로 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참깨 함유량이 49%이므로 2)항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기준」상으로는 이 물품은 제1704호에 분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준에 따라 HS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제2008호에 분류됨을 주장했으나, 제71차 HS 위원회는 투표 결과 이 물품을 제1704호에 분류했다.

4. 품목분류 유보 요청과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이 결정에 대해 유보 요청했고 HS 위원회는 한국의 유보 요청에 따라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했다. 품목분류 재검토 시 한국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본 물품은 '설탕과자'보다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참깨를 먹기 위한 '참깨 가공품'임**
- 참깨는 고소한 특유의 향미를 갖추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며,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은 다른 식용유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B1·B2, 철분, 칼슘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깨를 기본 재료로 한 식품도 발달돼 옴
- 제품명으로 알 수 있듯이 본 물품은 참깨를 먹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원상의 참깨가 없으면 제품화 자체가 불가능함
- 외관은 앞, 뒤가 전부 껍질을 벗긴 원상의 참깨로 이뤄진 단층의 판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처음에는 설탕의 단맛이 났지만, 씹을 수록 바삭바삭한 식감과 참깨의 풍미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참깨의 고소한 맛과 단맛을 느낄 수 있음
- 원상의 참깨가 그대로 표면에 노출돼 있고, 주요한 맛은 대체적으로 참깨에서 유래된 향과 고소한 맛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함량 여부와 관계 없이 본질적인 특성은 여전히 '참깨'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참깨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제1704호 분류 가능**
- 제2008호 해설서는 참깨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 이 호에 남도록 해설하는 한편, 설탕이나 감미료로 단맛을 낸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
- 제1704호 해설에는 '설탕 제품'이 분류되며, "설탕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을 언급하고 있어, 본질적인 특성이 설탕에 있는 경우에만 제17류에 분류돼야 함
- 본 물품의 용적이나 가격 측면에서 설탕, 감미료보다는 참깨의 비중이 높음
- 제조사가 제시한 품명(Sesame snack)상으로도 '참깨'가 주재료로 사용됐으므로 가격, 용적, 역할상으로도 '참깨'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보는 것이 적절함

한국은 단순히 시장에서 총칭되는 상품명으로서의 설탕과자라는 용어 이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관점에서 설탕과자의 정의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그리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의 관점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물품이 제1704호의 설탕과자보다는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참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 위원회에서 대부분 참가국들은 다량의 설탕이 함유돼 달콤한 맛을 내는 참깨 간식이라는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접근으로 이 물품이 제1704호의 설탕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선호했다. 한국의 두 차례 유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은 HS 위원회에서 세 번의 논의과정에서 모두 제1704호로 결정됐다.

5. 「품목분류 적용기준」과 가공 농산물 품목분류 문제

주로 HS 제7류부터 제12류에 분류되는 채소, 과실 및 견과류, 곡물 등과 이를 가공 또는 보존처리한 물품 간의 구분 기준은 HS 품목분류표나 HS 해설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는 그러한 물품 중 국내 정책상 민감한 물품 또는 세율차가 큰 물품 위주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앞서 말한 것처럼 품목분류표나 해설서에서 정의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레벨에서는 앞의 참깨 스낵 분류와 같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적용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부족한 농산물 분야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물품들이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번호	품명	적용기준
21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 옥수수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2	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침출차용은 제2101호에 분류한다.
26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5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WCO 제73차 HS 위원회(2024. 3.)에서는 껍질을 벗긴 볶은 녹두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해당 회기에서 우리나라의 견해와 다르게 품목분류 결정[2]돼 한국의 유보 요청에 따라 제74차 위원회(2024. 9.)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세율 체계로 인해 이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분쟁과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물품들이 WCO HS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다른 결정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당국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WCO HS 위원회 결정사례 및 품목분류의견서 등재 건은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는데 이 경우 관세청 고시와 기재부령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은 쟁점 볶은 녹두의 효소 활성화 반응, 수용성 단백질 비율 등의 분석관련 지표 등을 근거로 이 물품이 제7류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가공이 이뤄진 물품은 아니므로 제0713호 분류를 주장했으나, 투표 결과 40대 1로 제2005호로 결정됨

즉석밥 분류 사례
- 2018년도 5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사진 : CJ제일제당 홈페이지)

한국인에게 '밥'이란 여러 의미를 내포한 단어다. 쌀을 물에 삶거나 찐, 말 그대로 음식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식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식사를 같이 하는 사회적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흔히 지인을 우연히 마주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우리 밥 한번 먹자"고 말하는 것도 '밥'이 사회적인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한국인의 삶에서 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이지만, 과거보다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메뉴와 식당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

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1인당 연간 양곡(쌀 및 기타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40년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양곡 소비량은 64.6㎏으로 조사됐다. 30년 전 1993년의 양곡 소비량은 122.1㎏으로 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양곡 소비량 중에서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밥을 해먹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더 가깝고 간편하게 느껴진다. 다양한 밥솥의 출시도 한몫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즉석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레인지 또는 끓는 물에 넣고 잠깐 데우면 갓 지은 것처럼 고슬고슬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도, 요리할 시간적인 여유나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즉석밥만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지금에야 즉석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즉석밥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그렇다면 즉석밥의 시초는 과연 햇반일까?

즉석밥의 역사, 100년이나 됐다?

즉석밥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 1923년 아프가니스탄 국왕의 사촌인 아툴라 K. 오자이-듀라니는 석유화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정착했고, 어느 날 지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지인들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며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학자이자 원예가에 박학다식했던 듀라니는 귀가 솔깃해지며 즉석밥에 관심을 갖게 됐다. 100년 전 미국에서는 쌀이 저장하기도 조리하기도 번거로워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이다. 이에 쌀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듀라니는 18년에 걸쳐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즉석밥 개발에 성공했다.

듀라니가 개발한 즉석밥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쌀을 부분 조리한 뒤 탈수 및 건조시키는 것이었다. 조리 또한 끓는 물에 쌀을 붓고 저어 뚜껑을 덮어 두기만 하면 된다. 듀라니가 즉석밥을 개발할 때는 1941년으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듀라니는 밥과 냄비, 휴대용 화로 등 조리도구를 챙겨 미국의 식품대기업 제너럴 푸즈(現 크래프트 하인즈)를 찾아갔고 '미닛 라이스(Minute Rice)'라 이름 붙인 자신의 즉석밥을 직접 선보였다. 당시 조리는 5분 정도 소요됐지만, 기존에 쌀로 밥을 짓는데 15~30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을 훨씬 단축한 셈이다. 제너럴 푸즈는 듀라니의 즉석밥 레시피를 100만 달러 단위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군용식으로 납품해 즉석밥의 효용과 품질 검증 절차를 거쳤다.

1946년에는 시중에 미닛 라이스가 판매됐다. 1949년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미닛 라이스를 많은 이에게 알렸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쌀이 주식은 아니었지만, 워낙 제품의 간편한 특성이 시대와 잘 맞아떨어졌고 결국 미닛 라이스는 인기리에 판매됐다.

국내 최초 즉석밥, 다른 이름 붙을 뻔 했다?

국내에서는 주식인 쌀을 즉석식품으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즉석밥이 첫 출시될 당시,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 일본은 즉석밥 시장에서 한국보다 10년가량 앞서고 있었다. 1980년 레토르트밥, 1984년에 냉동밥이 출시됐고 갓 지은 밥을 무균 상태로 포장한 무균 포장밥이 1988년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 식품회사가 1995년 무균 포장밥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문제가 있었다. 쌀을 세척하고 밥을 짓는 공정과 함께 반도체 공장 수준의 클린룸 설비를 갖춰야 밥을 담는 용기 내외의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 최소 100억 원을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고 사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시장 조사 결과 소비자는 담백한, 집에서 지은 것 같은 흰쌀밥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1996년 회사는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 클린룸 및 무균 포장 설비를 구축하고 그해 12월 즉석밥을 출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은 즉석밥의 고유명사가 된 '햇반'이라는 이름이 출시 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꼴찌를 했다는 것이다. '○솥밥' '밥○' 같은 이름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햇반은 출시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오늘날 쌀 소비의 버팀목이 됐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한국인이 간편하게 먹는 즉석밥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내용량 : 260g)

- 용도 : 온수 또는 냉수를 부어서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1904.90-101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4.90-1010호에는 '찌거나 삶은 쌀'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조리한 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 조리한 곡물'이 분류되고, 제1904.90-1010호에는 '찌거나 삶은 쌀'이 분류된다. 다만, 사전조리한 쌀은 아래 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904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자.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19류) 곡물. 고운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호	(제1904호) <전략> ··· 낱알 모양, 플레이크 모양 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HSK	(제1904.90호) 기타 (제1904.90-1010호) 찌거나 삶은 쌀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1904.90-1010호
품명	Steamed rice; 알파미; JAPAN
물품 설명	○ 개요 -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230g)[분석 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온수 또는 냉수를 부어서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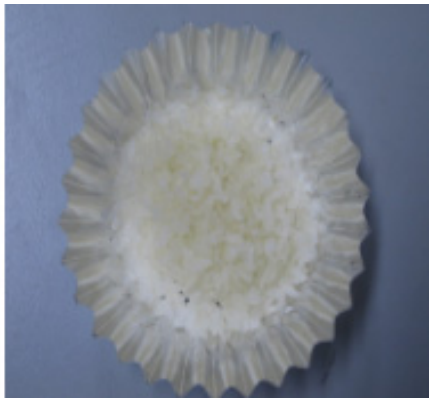

찹쌀가루 조제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탕원(湯圓)'은 찹쌀가루로 경단을 만들어 속을 넣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만든 중국 요리다. 주로 중화권 정월대보름 명절 행사인 원소절에 먹는 전통음식이다.

소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그 모양이 동그란 것은 가정의 화목과 단란함을 상징한다.

찹쌀가루를 둥글게 반죽해 안에는 깨, 땅콩, 콩 등의 속을 넣어 채운다. 속은 달게 하거나 짭짜름하게 하거나, 아예 속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 남방지역에서는 크게 만드는 편이다. 반죽한 것은 끓는 물에 넣고 삶아서 국요리로 만들어 먹는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탕위안(탕원)'이라고 부르며, 찹쌀가루 반죽 내부에 땅콩가루, 식물성 유지, 설탕 등으로 만든 속을 넣어 성형한 백색 볼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고 냉동한 것으로 제1905.90-909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 "(Ⅱ)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 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찹쌀을 주성분으로 한 반죽 내부에 땅콩가루 등을 넣어 완전히 감싼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쌀가루에 있어 베이커리 제품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다.

따라서, 본 물품을 쌀가루 조제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9091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BAKERS' WARES	1905.90-9090 (A 8%)	Rice flour preparation	1901.90-9091 (W2 513%)

헤어드라이어 유해 전자파 논란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를 만족할 때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휴대폰 등의 전자파는 미약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 유해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밀착형 가전제품의 전자파 유해 관련 보도가 있었다. 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 안전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발표된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산 헤어드라이어, 목 선풍기, 노트북 어댑터 등의 전자파 수치 시연을 진행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하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안전 기준치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세우는 인체보호 기준보다 더 높은 수치 1168mG(밀리가우스)가 나왔다.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관련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자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측정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 그때마다 과기부는 국내 제품에서는 인체 보호기준(833mG)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자 센터 측은 이렇게 직접 시연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에서 휴대용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물품은 제8516호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 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에 분류된다.

호 해설서에서 "(C)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와 손 건조기로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hair curler),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건조기(hand dryer) 등"에 대해서 예시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목 선풍기는 열을 이용한 제품이 아닌 선풍기(fans)의 일종이므로 제8414호 '기체펌프나 진공펌프·압축기와 팬(fans) … <후략>'에 분류될 것이다.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97호_2024.9.2.

최신개정법령

고시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훈령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1. 31.)

1. 개정 사유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유사 고시 통폐합, 지침을 고시에 반영, 해운업계 건의사항 반영

○ 수입통관 대상 선박 중 국내운항 목적 없이 계속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국제무역선의 자격 유지 및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한 선박의 마무리 작업 승선자에 대한 자율관리 허용 등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 수용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출항허가사항에 대한 정정을 허용하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 반환 절차를 마련하여 업계의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 기한 확대(제10조 제2항)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시 세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허가 24시간 후에도 정정 허용

※ 청 지침(관세국경감시과-2192, `23.6.13.)을 고시에 반영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제13조 제3항 신설)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 고시」 규정을 본 고시로 통합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취소 신청서 마련(제14조 제4항 신설)

○ 「관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신청서는 있으나, 취소관련 서식이 없어 취소 신청서식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 사항 규정(제24조 제1항 제4호)

○ 국내운항선으로 자격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해운법」에 따른 일시적 국내운송 신고하여 수리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

○ 해양수산부로부터 일시적인 국내운송신고수리 받은 선박이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국제무역선 자격으로서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로 인정(「관세법」 제2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개정사항 반영)

가.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항 간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나. 「관세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다.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 수입통관 선박의 국제무역선 자격전환 특례 허용(제25조의2 자격전환 특례 신설)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최초 입항할 때 수입통관해야 하는 선박 중 「해운법」상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 운항계획 없이 계속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출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를 허용

□ 새로 건조한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후 선박제조업체의 승선자 자율관리 허용(제32조 제3항 신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선박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수리 후 작업승선자에 대한 승선신고를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상시승선증의 발급이 가능한 영업등록업자에 대한 인용조문오류 정정(제40조 제5항)

□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FAX → 팩스, 출국대합실 → 출국대기실, 항계 → 국제항의 수상구역, 묘박지 → 정박지, 징구 → 제출 등

3. 시행일자 : 2024. 00. 00.

4.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이철 사무관(042-481-1143)

ㅇ 제출방법 : aegis2779@korea.kr

※ 개정 예고 전문은 www.custra.com 참조

훈령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2호, 2022. 2. 28.)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동일 업무 중복 규정 삭제(제20조)

소송 종결 보고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비용 확정신청 검토의견서 제출은 제28조와 중복된 것이므로 제20조에서 삭제함

나.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삭제(제21조)

행정소송 사건의 소취하 동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사전지휘 요청을 위한 의견서 및 우편송달통지서를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다.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문구 정비(제25조)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세관장이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 지정되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라. 소송비용의 회수절차의 단서 규정 마련(제28조)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비용확정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마. 소송비용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30조)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법무부장관 승인대상이 아닌 점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고, 국가소송 사건의 경우는 검찰청의 응소지휘 절차에 따르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제2항은 삭제함

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3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즉시항고·재항고의 제기·포기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정비하고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반영함

사.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정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과 동일하게 내용 정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예고 전문은 www.custra.com 참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 5. 1.)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 상대 관세당국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통지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에 체약당사국과의 합의한 방법 반영

□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산지 질문서' 및 '가산세 등 면제신청서' 서식 내용 변경

□ 평택직할세관 산하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 사항 반영

□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1.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위반사항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원산지조사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 서면으로 진행한 수출물품 원산지조사에 대한 평가회의 신설(제34조 7항)

ㅇ 수출조사 서면조사 후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 위반 원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위반 재발방지와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ㅇ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71호 서식)

2. 체약상대국에 조사요청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으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으로도 가능

□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 동시 회신 외에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만으로 요청 및 회신 가능
(제37조, 제62조, 제66조, 제69조, 제94조)

3.「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개정

□ 「FTA 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개정('23.2.28.)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서류 변경* 사항 반영

*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에게는 원재료내역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부담 완화

ㅇ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별지 제32호의3 서식)의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자료 ‘근거 조항 및 보관대상자료’ 현행화

□ 「FTA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보정이자) 신설*(’24.2.29.)에 따라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별지 30호의2 서식) 상의 근거 조항 변경

*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

4.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정의) “원산지조사부서” 순서 정비 및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 변경

5. 타 훈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의2 서식(임의제출서) 폐지에 따라 ‘임의제출서’ 서식 별도 신설(별지 제72호 서식)

□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107조 제3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03호, 2024. 7. 2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 및 변경절차 규정(안 제4조, 제8조)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근거 법령을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함

나.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안 제8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의약품 제조(수입)업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함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의약품 자료보호 대상 및 공개 항목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규정하며, 자료보호 관련 제품명, 업체명, 자료보호기간 등을 공개 항목으로 규정함

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policy@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도서 안내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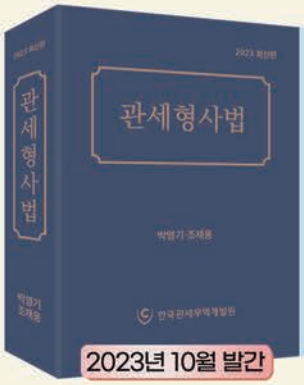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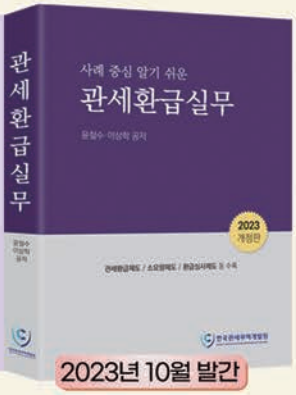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ecial price!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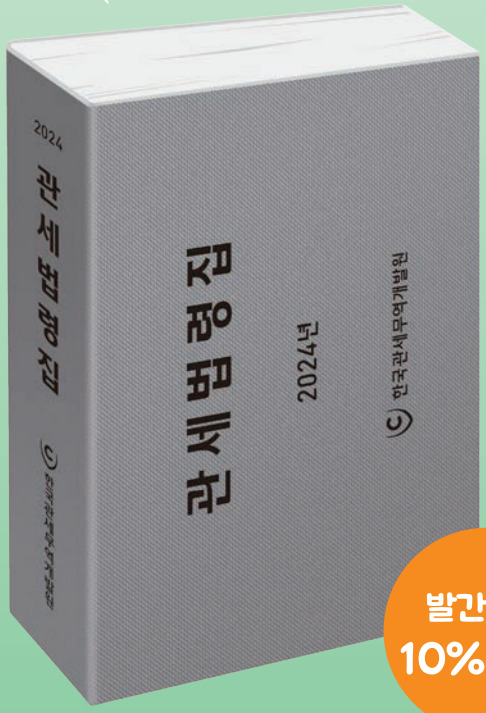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